제296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일 반 의 안
(11건)

거 창 군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부서명	페이지
2026-130	(재)거창군장학회 2027년 출연안	인구교육과	1
2026-131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재무과	7
2026-132	2026년 상반기 군 금고 운용상황 보고		11
2026-133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경제기업과	17
2026-134	2026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공모 보고		25
2026-135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	산림과	29
2026-136	거창 임업대학 민간위탁 동의안		45
2026-137	산림치유, 숲해설 및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9
2026-138	거창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025~2034) 2025년 추진상황 점검 결과 보고	환경과	별책
2026-139	2027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공모 신청 보고	체육시설사업소	57
2026-140	2027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 공모 신청 보고		61

(재)거창군장학회 2027년 출연안

의안 번호	2026 - 130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가. 교육여건 개선 및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한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등 다양한 수요 맞춤형 장학사업 운영을 위해 거창군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 요

1) 근 거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2) 출 연 금 : 1,39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년 편성액	2027년 요구액	증감
계	3,394	**1,395**	△1,999
장학기금 확대	2,250	-	△2,250
장학사업 추진	665	**665**	-
한국승강기대학교 대학생 등록금 지원	169	**420**	251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250	**250**	-
영어 사이버스쿨 운영	60	**60**	-

3) 내 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합계	**1,395**		
장학사업 추진	665	소계	
	200	중·고교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 지원	
	175	초·중·고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160	초·중학교 예체능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 지원	
	80	저소득층 중·고생 필수과목(국·영·수) 학원비 지원	
	50	중학교 진로·진학 지도사업 지원	
등록금 지원	420	한국승강기대학교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100% 지원	
	250	거창군 출신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100만원 한도 지원	
영어사이버스쿨	60	초·중학생 1:1 원어민 화상 영어수업 지원	

나. 부서의견

1) 지역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학사업 추진 필요
2) 학생과 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 인구 유입 도모로 지역소멸에 대응하고자 거창군 지역 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필요
3) 승강기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인력 양성과 관내 대학교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승강기대학교 대학생 등록금 지원 필요
4) 외국어 학습환경 접촉 기회 부족에 따른 교육격차 해소 및 영어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참고1 참조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2)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0조
3)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4)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제4조, 제7조
5)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7조

나. 거창군장학회 현황 : 참고2 참조

다. 2026년 거창군장학회 주요사업 현황 : 참고3 참조

참고1 관계 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⑤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 4. 1.>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거창군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재산의 조성)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거창군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개인 · 법인 또는 단체의 자발적인 출연금과 그 밖의 재산
3. 기본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경영을 통한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 거창군 학교법인 한국승강기대학 및 재학생 지원조례

제4조(등록금 지원) ① 군수는 대학에 다니는 학생(입학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학 등록에 필요한 수업료와 입학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산 범위에서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등록금 지원업무를 「거창군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의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등록금의 지원) ① 군수는 군 출신 인재 양성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등록금 지원 업무를 「거창군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참고2 (재)거창군장학회 현황

<table>
<tr><td rowspan="2">설립근거</td><td colspan="3">- 법 률 : 교육기본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시행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조 례 :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td><td>전화번호 : 055-940-8813</td></tr>
<tr><td colspan="3"></td><td>홈페이지 :
www.gcdream.kr</td></tr>
<tr><td>주요연혁</td><td colspan="2">- 설립연도 : 2005. 12. 16.
- 장학기금 200억원 달성 : 2026년</td><td>기관형태
(출자, 출연)</td><td>출연기관</td></tr>
<tr><td rowspan="2">직원현황
('26. 9.
현원 기준)</td><td colspan="2">계</td><td colspan="2">정규직</td><td>비정규직</td></tr>
<tr><td colspan="2">0명</td><td colspan="2">0명</td><td>0명</td></tr>
<tr><td rowspan="18">임 원
('26. 9. 기준)</td><td>직 책</td><td>성 명</td><td colspan="2">주요경력</td><td>임 기</td></tr>
<tr><td>이사장</td><td>이홍기</td><td colspan="2">거창군수</td><td>재직기간(당연직)</td></tr>
<tr><td>상임이사</td><td>안철우</td><td colspan="2">거창문화원장</td><td>2년('25.12.26.~'27.12.25.)</td></tr>
<tr><td>이 사</td><td>신재국</td><td colspan="2">거창교육지원청 교육장</td><td>재직기간(당연직)</td></tr>
<tr><td>이 사</td><td>박현보</td><td colspan="2">거창신협 이사장</td><td>2년('24.12.24.~'26.12.23.)</td></tr>
<tr><td>이 사</td><td>신양건</td><td colspan="2">승강기밸리기업협의회장</td><td>2년('25.12.26.~'27.12.25.)</td></tr>
<tr><td>이 사</td><td>박노해</td><td colspan="2">거창문화원 향토사연구소장</td><td>〃</td></tr>
<tr><td>이 사</td><td>강택섭</td><td colspan="2">거창군상공협의회장</td><td>〃</td></tr>
<tr><td>이 사</td><td>김일구</td><td colspan="2">(사)한국외식업중앙회 거창군지부장</td><td>〃</td></tr>
<tr><td>이 사</td><td>박진양</td><td colspan="2">평생학습동아리 연합회장</td><td>2년('24.12.24.~'26.12.23.)</td></tr>
<tr><td>이 사</td><td>최성기</td><td colspan="2">거창군새마을회장</td><td>〃</td></tr>
<tr><td>이 사</td><td>신연숙</td><td colspan="2">평생학습활동가 회장</td><td>〃</td></tr>
<tr><td>이 사</td><td>김은애</td><td colspan="2">두나미스 교육연구소 대표</td><td>2년('25.12.26.~'27.12.25.)</td></tr>
<tr><td>이 사</td><td>김득철</td><td colspan="2">거창일반산업단지협의회장</td><td>〃</td></tr>
<tr><td>이 사</td><td>양희용</td><td colspan="2">거창군학원연합회장</td><td>〃</td></tr>
<tr><td>감 사</td><td>안영길</td><td colspan="2">법무사안영길사무소 대표</td><td>〃</td></tr>
<tr><td>감 사</td><td>최인식</td><td colspan="2">행정동우회 거창군분회 부회장</td><td>2년('24.12.24.~'26.12.23.)</td></tr>
<tr><td>주요기능</td><td colspan="5">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사업 및 필요한 지원</td></tr>
<tr><td colspan="2">자본금
(단위:백만원)</td><td colspan="2">17,760
(직전연도말 기준)</td><td>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td><td>3,394
(직전연도말 기준)</td></tr>
<tr><td rowspan="4">최근 3년간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td><td>연 도</td><td>2024</td><td>2025</td><td>2026</td><td rowspan="4">재무현황
(백만원)
'25. 12. 31.기준</td></tr>
<tr><td>예산액</td><td>5,193</td><td>5,991</td><td>6,483</td><td>자산</td><td>20,469
(자산 총액)</td></tr>
<tr><td>지자체
지원액</td><td>3,695</td><td>3,394</td><td>3,394</td><td>부채</td><td>2,724
(부채 총액)</td></tr>
<tr><td colspan="3"></td><td>자본</td><td>17,760
(자본금 총액)</td></tr>
<tr><td rowspan="2">경영성과
(단위: 백만원)
'25. 12. 31.기준</td><td colspan="2">총수익</td><td colspan="2">총비용</td><td>당기순이익</td></tr>
<tr><td colspan="2">1,825</td><td colspan="2">1,266</td><td>583</td></tr>
</table>

참고3 2026년 (재)거창군장학회 주요사업 현황

연번	사 업 명	사업비(천원)			사업내용
		계	출연금	장학회	
		1,817,060	**1,144,000**	**673,060**	
1	**청소년 국제화 교류사업**	200,000	200,000	-	중·고등학교 해외 소재 자매결연 학교와 교류 지원(12개교)
2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230,000	230,000	-	초중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등 지원(10개교, 원어민교사 4명)
3	**특기적성·특색학교 프로그램 지원**	100,000	100,000	-	초·중학교 예체능 및 특색학교 프로그램 운영 지원(21개교, 34개 프로그램)
4	**두드림(DO DREAM) 사업**	80,000	80,000	-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국·영·수 학원비 지원(100명, 10만원/월, 8개월)
5	**진로·진학 지도사업**	50,000	50,000	-	중학교 진로 지도, 진로 체험 지원 (6개교, 학생 수 비례 지원)
6	**학원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지원**	5,000	5,000	-	전문강사 초청 학원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아동학대 방지 등) 강사료 지원
7	**한국승강기대학교 대학생 등록금 지원**	169,000	169,000	-	본인부담 등록금 50% 한도 지원 ('26년 1학기 111명, 84,430천원 지원)
8	**거창군 지역출신 대학생 등록금 지원**	500,000	250,000	250,000	본인부담 등록금 100만원 한도 지원 ('26년 1학기 117명, 107,551천원 지원)
9	**영어 사이버스쿨**	60,000	60,000	-	초·중학생 1:1 원어민 화상영어 지원 (100명, 6개월)
10	**장학생 선발**	171,500	-	171,500	초·중·고·대학생 7개 분야, 145명 선발 (고교 재학, 수능 우수, 예체능 장학생 등)
11	**창의·융합 영재캠프 지원**	22,000	-	22,000	거창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여름방학 중 합숙·체험형 영재캠프 지원
12	**고교-대학 브릿지 진로체험교육**	15,000	-	15,000	대학교 방문을 통한 진로 체험, 전공 탐색 등 고교 진로체험 프로그램 지원
13	**학생 생활환경 개선 지원**	165,000	-	165,000	농어촌 자율학교 등 고교 환경개선 지원(거창여고, 거창고, 대성고, 아림고)
14	**진주교대 교육실습 협력학교 지원**	24,560	-	24,560	남상초 진주교대 교육실습학교 선정에 따른 기자재 및 실습생 경비 지원
15	**청소년 자치캠프 지원**	9,000	-	9,000	중학생 학생회 자치캠프 개최 지원 (3회)
16	**수능 수험생 응원키트 지원**	16,000	-	16,000	수험생 격려를 위한 응원키트 배부 (고3 학생 750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의안 번호	2026 - 131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가. 지방세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에 대해 2027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거창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1) 근 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2) 기 관 : 한국지방세연구원(이사장 정종섭)

3) 내 용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 **지방세 불복사건 자문 등 쟁송사무 지원**

나. 출연금액 : 4,191천원

1) 2027년 예산편성 요구액

【단위: 천원】

구 분	2026년	**2027년**	재원별				
			계	균 특	도 비	군 비	기 타
출연금	4,063	**4,191**	4,191	-	-	4,191	

※ 산출기초 : '25년 결산 보통세 41,905,756천원 × 1.0/10,000

다. 부서의견

1) 한국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 등 정책개발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 「지방재정법」 제18조

2)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나. 출연기관 현황

붙임1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25년도말 법령 개정을 통해 법정 출연율 인하 예정 (현행)1만분의 1.2 → (개정)1만분의 1.0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0**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붙임2 출연기관 현황

[기관명 : 한국지방세연구원(서울 소재)]

<table>
<tr><td>설립근거</td><td colspan="3">법 률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td><td>02-2071-2748
www.kilf.re.kr</td></tr>
<tr><td>주요연혁</td><td colspan="2">-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td><td>기관형태
(출자, 출연)</td><td>- 출연</td></tr>
<tr><td>인원현황
(2026년
8월 기준)</td><td colspan="4">
<table>
<tr><th rowspan="2">구 분</th><th rowspan="2">계</th><th rowspan="2">원장</th><th colspan="4">연구관련직</th><th rowspan="2">사무직
시설직</th></tr>
<tr><th>연구위원직</th><th>연구원직</th><th>조사분석직</th><th>전문직 등</th></tr>
<tr><td>정 원</td><td>78</td><td>1</td><td>24</td><td>18</td><td>8</td><td>10</td><td>17</td></tr>
<tr><td>현 원</td><td>61</td><td>1</td><td>16</td><td>10</td><td>8</td><td>9</td><td>17</td></tr>
<tr><td>총인원</td><td>91</td><td colspan="6">정원외 인원 30명 (파견공무원 12, 위촉직 연구전문·행정원 등 18)</td></tr>
</table>
</td></tr>
<tr><td>임 원
(2026년
8월 기준)</td><td colspan="4">
<table>
<tr><th>직 책
(직책명)</th><th>성 명</th><th>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th><th>비 고</th></tr>
<tr><td>이 사 장</td><td>정 종 섭</td><td>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td><td>2024.2.2. ~
2027.2.1.</td></tr>
<tr><td>부이사장</td><td>성 낙 인</td><td>경상남도 창녕군수</td><td>2026.3.13. ~
2027.3.12.</td></tr>
<tr><td>이 사</td><td>신 승 근</td><td>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td><td>당 연 직</td></tr>
<tr><td>이 사</td><td>이 현 정</td><td>행정안전부 지방세제국장</td><td>당 연 직</td></tr>
<tr><td>이 사</td><td>김 동 현</td><td>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자치정책관</td><td>2025.8.30. ~
2026.8.29.</td></tr>
<tr><td>이 사</td><td>이 상 호</td><td>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국장</td><td>2025.8.30. ~
2026.8.29.</td></tr>
<tr><td>이 사</td><td>심 원 섭</td><td>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국장</td><td>2025.8.30. ~
2026.8.29.</td></tr>
<tr><td>이 사</td><td>신 종 우</td><td>경상남도 행정국장</td><td>2025.8.30. ~
2026.8.29.</td></tr>
<tr><td>이 사</td><td>김 성 수</td><td>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td><td>2026.3.13. ~
2027.3.12.</td></tr>
<tr><td>이 사</td><td>김 병 내</td><td>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td><td>2026.3.13. ~
2027.3.12.</td></tr>
<tr><td>이 사</td><td>조 규 일</td><td>경상남도 진주시장</td><td>2026.3.13. ~
2027.3.12.</td></tr>
<tr><td>이 사</td><td>이 상 범</td><td>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연구실장</td><td>2025.8.30. ~
2027.8.29.</td></tr>
<tr><td>감 사</td><td>김 정 선</td><td>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td><td>당 연 직</td></tr>
<tr><td>감 사</td><td>김 옥 흔</td><td>대구광역시 남구 부구청장</td><td>2026.3.5. ~
2028.3.4.</td></tr>
</table>
</td></tr>
<tr><td>주요기능</td><td colspan="4">-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td></tr>
<tr><td colspan="2">설립자본금
(단위:백만원)</td><td colspan="2">1
(직전연도말 기준)</td><td>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td><td>139,826
('11~'25 까지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금액)</td></tr>
<tr><td rowspan="4">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td><td>연도</td><td>2024</td><td>2025</td><td>2026</td><td rowspan="4">재무현황
(백만원)
'25.12.31기준</td><td>자산</td><td>28,531</td></tr>
<tr><td>예산액</td><td>17,813</td><td>17,467</td><td>16,757</td><td>부채</td><td>1,583</td></tr>
<tr><td rowspan="2">지자체
지원액</td><td rowspan="2">13,079</td><td rowspan="2">12,415</td><td rowspan="2">10,470</td><td rowspan="2">자본</td><td rowspan="2">26,948</td></tr>
<tr></tr>
<tr><td rowspan="2">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5.12.31기준</td><td colspan="3">총수익</td><td>총비용</td><td>당기순이익</td></tr>
<tr><td colspan="3">17,600</td><td>16,554</td><td>1,379</td></tr>
</table>

2026년 상반기 군 금고 운용상황 보고

의안 번호	2026 - 132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 「거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8조에 따라 **2026년 상반기 거창군 금고 공공자금 운용 상황**에 대하여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군 금고 자금 운용 현황

○ 회계별 자금운용 평균잔액 현황

(2026년 상반기)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정기예금	공금예금	비 고
합 계		**215,417,572**	182,621,807	32,795,765	
일반회계		120,003,274	107,138,121	12,865,153	
특별회계	공기업	14,414,846	9,885,082	4,529,764	
	기 타	9,210,525	251,994	8,958,531	
기 금		71,788,927	65,346,610	6,442,317	

※ 평균잔액 : 월 또는 분기(기간)별 계좌의 잔액을 평균한 금액

나. 이자수입 현황

○ 총괄 현황

(2026년 상반기) (단위:천원)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 금	비 고
		공기업	기 타		
3,308,095	2,114,729	229,216	38,081	926,069	

다. 군 금고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 사항

○ 경영실태 평가

구 분	1 금고	2 금고	비 고
경영실태	경영관리 적정 (1등급 / 1등급)	경영관리 적정 (2등급 / 2등급)	

※세부경영지표

항 목	평가시기	1 금고		2 금고	
총자본비율	2026년 6월말	18.79%	1등급(우수)	14.15%	2등급(양호)
고정이하여신비율	2026년 6월말	0.52%	1등급(우수)	1.09%	2등급(양호)
자기자본이익률	평가대상아님				
대손충당금적립률	평가대상아님				

○ 재무건전성 평가

구 분	1 금고	2 금고	비 고
재무건전성	투자적격	투자적격	

※측정지표

구 분	외국평가기관					
	Moody's		S&P		Fitch	
	장기	단기	장기	단기	장기	단기
1금고	Aa3	P-1	A+	A-1	A	F1+
2금고	A2	P-1				

구 분	국내평가기관		
	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1금고	AAA	AAA	AAA
2금고	AA+	AA+	AA+

라. 예금과목별 금액 및 예치기간, 수익률, 이자수입 현황(6.30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기간(상품별)	평균잔액	금 리(%)	이자액	수익률(%)
총 계				215,417,572		3,308,095	1.53
1금고 농협은행	일반회계		소 계	120,003,274		2,114,729	
			공공예금	12,865,153	0.65	41,467	
			1개월	19,668,508	2.30	213,449	
			3개월	59,348,066	2.35	812,204	
			6개월	3,812,155	2.55	117,157	
			1년이상	24,309,392	2.70	930,452	
	특별회계	합 계		9,476,341		38,718	
		주차장	소계	482,835		9,935	
			공금예금	230,841	0.65	744	
			12개월	251,994	2.70	9,191	
		농업인소득지원	공금예금	3,016,943	0.65	9,724	
		의료급여	공금예금	85,745	0.65	276	
		댐주변지역	공금예금	448,186	0.65	1,445	
		발전소주변지역	공금예금	8,099	0.65	26	
		산업단지조성	공금예금	5,071,825	0.65	16,348	
		골프장사업공기업	소계	362,708		964	
			공금예금	220,719	0.65	438	
			12개월	141,989	2.70	526	
	기금	합 계		71,788,927		926,069	
		식품진흥	소 계	146,990		1,557	
			공금예금	22,218	0.65	72	
			12개월	124,772	2.70	1,485	
		재난관리	소 계	4,336,146		61,554	
			공공예금	2,018,146	0.65	6,505	
			12개월	2,318,000	2.70	55,049	
		아림예술제진흥	소 계	540,406		9,840	
			공금예금	5,908	0.65	19	
			6개월	219,469	2.55	6,072	
			12개월	315,029	2.70	3,749	
		노인복지	소 계	1,144,658		38,897	
			공금예금	97,658	0.65	315	
			12개월	1,047,000	2.70	38,582	
		고향사랑	소 계	1,389,057		15,492	
			공금예금	656,184	0.65	2,115	
			6개월	732,873	2.55	13,377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기간(상품별)	평균잔액	금 리(%)	이자액	수익률(%)
1금고 농협은행	기금	중소기업육성	**소 계**	**3,827,279**		**74,472**	
			공금예금	386,948	0.65	1,247	
			12개월	340,331	2.70	18,652	
			36개월	3,100,000	2.55	54,573	
		체육진흥	**소 계**	**1,141,894**		**40,332**	
			공금예금	1	0.65	0	
			12개월	1,141,893	2.70	40,332	
		재정안정화	**소 계**	**41,575,556**		**472,296**	
			공금예금	8,299	0.65	27	
			6개월	30,000,000	2.55	334,603	
			12개월	11,567,257	2.70	137,666	
		통합재정	**소 계**	**12,745,096**		**156,165**	
			공금예금	8,646	0.65	28	
			6개월	1,416,484	2.55	21,414	
			12개월	11,319,966	2.70	134,723	
		옥외광고발전	**소 계**	**388,889**		**4,427**	
			공금예금	88,889	0.65	287	
			12개월	200,000	2.70	2,380	
			36개월	100,000	2.55	1,760	
		자활	**소 계**	**1,480,044**		**41,132**	
			공금예금	76,508	0.65	247	
			12개월	1,403,536	2.70	40,885	
		화장시설주변지역	공공예금	3,072,912	0.65	9,905	
2금고 경남은행	특별회계	**합 계**		**14,149,030**		**228,579**	
		수질개선특별회계	공공예금	96,892	0.70	327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소 계**	**6,132,270**		**106,927**	
			공공예금	1,466,525	0.70	5,091	
			1개월	143,646	1.95	2,801	
			3개월	301,105	2.05	6,173	
			6개월	4,220,994	2.20	92,862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소 계**	**7,919,868**		**121,325**	
			공공예금	2,842,520	0.70	9,867	
			1개월	1,005,525	1.95	19,608	
			3개월	1,071,823	2.05	21,972	
			12개월	3,000,000	2.20	69,878	

3. 관련법령 : [붙임] 참고

가.「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제7조

나.「거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제8조

붙 임 **관계법령**

❑ 거창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7조(의회 보고 등) ① 군수는 「거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제8조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별로 보고받은 공공자금 운용 상황보고서를 거창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상황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금과목별 금액 및 예치기간

2. 금융상품별 수익률

3. 이자수입 총액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거창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 8조 (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8.12 2015.7.22.)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8.12.)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안

의안 번호	2026 - 133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가. 어려운 경제여건속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신용보증재원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활성화 기대

2. 근거법령

가.「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7조(기본재산)

나.「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다.「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행정지원)

3. 주요내용

가. 대　　상 : 경남신용보증재단

나. 사 업 비 : 450백만원(군비)

- 2027년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 기간	2026년 예산액	2027년 요구액	비 고
2027년	450	450	

다. 사업내용 : 관내 소상공인 신용보증 대출

- 출연금 4.5억원 × 15배 = 67.5억원

4. 부서의견

가. 대내외적 복합적인 경제위기 상황, 소비위축 등으로 소상공인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어려운 상황으로,

나.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보증지원과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출연이 필요함

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 간 균형을 고려하여 동결함

5. 참고사항 : 붙임

가. 관련 법령

나. 경남신용보증재단 현황

다. 시군 출연금 관련 현황

라. 관련 공문

붙임1 관계법령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도 및 시·군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출연금
6. 보증료 등 그 밖의 수입

제6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안정적으로 재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군 및 유관기관에 출연금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붙임2 **출연기관 현황**

경남신용보증재단

<table>
<tr><td>설립근거</td><td colspan="4">지역신용보증재단법</td><td colspan="2">전화번호: 1644-2900
홈페이지:www.gnsinbo.or.kr</td></tr>
<tr><td>주요연혁</td><td colspan="3">1996.06.05. 경남신용보증조합 설립
2000.03.20. 경남신용보증재단 전환</td><td>기관형태
(출자, 출연)</td><td colspan="2">출연</td></tr>
<tr><td rowspan="2">인원현황
('25. 9. 30
현원기준)</td><td colspan="2">계</td><td colspan="2">정규직</td><td colspan="2">비정규직</td></tr>
<tr><td colspan="2">128명</td><td colspan="2">116명 * 이사장 포함</td><td colspan="2">12명</td></tr>
<tr><td rowspan="11">임 원
('26. 9.기준)</td><td>직 책
(직책명)</td><td>성 명
(익명처리)</td><td colspan="2">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td><td colspan="2">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td></tr>
<tr><td>이사장</td><td>공석</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비상임이사</td><td>손**</td><td colspan="2">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td><td colspan="2">'24.3.18~ (당연직)</td></tr>
<tr><td>〃</td><td>김**</td><td colspan="2">경상남도 경제통상국장</td><td colspan="2">'26.1.1~ (당연직)</td></tr>
<tr><td>〃</td><td>신**</td><td colspan="2">경남 소상공인연합회장</td><td colspan="2">'22.9.1~ '27.5.31</td></tr>
<tr><td>〃</td><td>이**</td><td colspan="2">신용보증재단중앙회 전문관</td><td colspan="2">'25.6.1~ '27.5.31</td></tr>
<tr><td>〃</td><td>허**</td><td colspan="2">경남은행 부행장</td><td colspan="2">'25.6.1~ '27.5.31</td></tr>
<tr><td>〃</td><td>김**</td><td colspan="2">농협은행 경남영업부장</td><td colspan="2">'26.2.19~ '27.5.31</td></tr>
<tr><td>노동이사</td><td>공**</td><td colspan="2">경남신용보증재단 구상권관리팀장</td><td colspan="2">'25.6.1~ '27.5.31</td></tr>
<tr><td>감사</td><td>김**</td><td colspan="2">다음회계사무소 이사</td><td colspan="2">'24.9.1~ '28.8.31</td></tr>
<tr><td>주요기능</td><td colspan="6">신용보증, 신용조사, 구상채권관리, 기본재산 관리, 경영지도</td></tr>
<tr><td colspan="2">자본금
(단위:백만원)</td><td colspan="2">379,971
(직전연도말 기준)</td><td colspan="2">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td><td>176,006
(직전연도말 기준)</td></tr>
<tr><td rowspan="4">최근 3년간
예산현황
(단위:백만원)</td><td>연도</td><td>2023</td><td>2024</td><td>2025</td><td rowspan="4">재무현황
(백만원)
'25.12.31 기준</td><td>자산</td><td>482,213
(자산 총액)</td></tr>
<tr><td>예산액</td><td>462,427</td><td>522,827</td><td>574,156</td><td>부채</td><td>102,242
(부채 총액)</td></tr>
<tr><td>지자체
지원액*</td><td>16,050</td><td>16,350</td><td>17,900</td><td>자본</td><td>379,971
(자본금 총액)</td></tr>
<tr><td rowspan="2">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6.9. 기준</td><td colspan="3">총수익</td><td colspan="2">총비용</td><td>당기순이익</td></tr>
<tr><td colspan="3">43,371</td><td colspan="2">80,835</td><td>△37,464</td></tr>
</table>

붙임3 시군 출연금 관련 현황

(단위 : 개소, 억원, '26. 6월 기준)

구분	소상공인('23년)		보증잔액		시·군 출연금			
	사업체	비중	금액	비중	'25년 실적	'26년 요청	'26년 실적(추정*)	'27년 요청
합 계	**490,268**	**100%**	**27,225**	**100%**	**157**	**212**	**161.5**	**280**
창원시	139006	28.5%	8130	29.8%	32	63	40*	82.5
진주시	50040	10.2%	2949	10.8%	20	20	20	29
통영시	21170	4.3%	1176	4.3%	6	8.5	6	11
사천시	16834	3.4%	790	2.9%	7	7	7	7.5
김해시	83632	17.1%	4410	16.2%	20	32	20	46.5
밀양시	16527	3.4%	917	3.4%	8	8	6	8.5
거제시	31966	6.5%	2119	7.8%	20	20	20	23
양산시	54060	11.0%	3060	11.2%	10	20	10	33
의령군	3629	0.7%	179	0.7%	2	2	2	2
함안군	12709	2.6%	807	3.0%	6	6.5	6	9
창녕군	8286	1.7%	384	1.4%	3.5	4	3.5	4
고성군	8391	1.7%	351	1.3%	3.5	3.5	3.5	4
남해군	7859	1.6%	320	1.2%	5	3	3	3.5
하동군	7767	1.6%	283	1.0%	3	3	3	3
산청군	6042	1.2%	293	1.1%	2	2.5	2.5	2.5
함양군	5960	1.2%	224	0.8%	2.5	2.5	2.5	2.5
거창군	**9949**	**2.0%**	**590**	**2.2%**	**4.5**	**4.5**	**4.5**	**6**
합천군	6441	1.3%	243	0.9%	2	2	2	2.5

○ 소상공인 수 (시)**창원>김해>양산>진주>거제**>통영>사천>밀양
(군)함안>**거창**>고성>창녕>남해>하동>합천>산청>함양>의령

○ 소상공인 수 대비 출연금 규모 (시)**거제>양산>창원>진주>김해**>통영>밀양>사천
(군)함안>거창>의령>창녕>고성>남해>함양>산청>합천>하동

*요청 : 총보증공급(25%), 보증잔액(30%), 대위변제(30%), 재정자립도(5%), 지역내총생산(5%), 사업체수(5%)

붙임4 **관련 공문**

"전국 최고 소기업·소상공인 종합솔루션 기관"

경남신용보증재단

수신자 거창군수(경제기업과장)

(경유)

제목 2027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원 요청(거창군)

1. 거창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남신용보증재단은 사업성은 있으나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보증지원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 등의 경영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공공기관입니다.

3. 장기화된 내수 침체와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몰려 있는 현 상황을 극복하고 경남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출연을 요청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7년 거창군 출연금 협조 요청 1부. 끝.

경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차장 조원호 부장 김지근 이사장 직무대행 08/25 박상진

협조자

시행 경영기획 2026-999 (2026. 8. 25.) 접수 ()

우 51408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4층(창원컨벤션센터) / https://gnsinbo.or.kr/

전화 055)715-5148 / 전송 055)717-0039 / cwonho@gnsinbo.or.kr / 공개

2027년 거창군 출연금 협조요청

❑ 출연 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자체 및 금융회사, 기업 등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

❍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 정부출연금, 도·시군 출연금, 금융기관 출연금, 기타 기관·단체 출연금, 보증료 등

❍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행정지원)
* 도지사는 안정적 재단 운영을 위해 시·군 및 유관기관에 출연금을 요청할 수 있음

❑ 재단 현황

❍ 신용보증 현황
- '26년 말 **추정 운용배수**(보증잔액/기본재산) **7.06**으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 예상

구 분	보증잔액	출연금액	대위변제순증액	당기순손실	기본재산	운용배수
'25년말	26,490억	622억	1,233억	375억	3,799억	6.97배
'26년말(추정)	27,700억	584억	1,083억	460억	3,924억	**7.06배**

❍ 대위변제 현황
- '26년 말 **대위변제율 3.91% 예상**(추정 대위변제순증 1,083억원 / 추정 보증잔액 27,700억원)
* 최근 3개년 대위변제율 추이 : ('23) 4.01% ('24) 6.10% ('25) 4.66%

❑ 거창군 주요실적 현황

구 분	총보증공급*		보증잔액**		대위변제*** 순증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6년 상반기 실적	945건	277억원	2,497건	590억원	58건	9억원

* 총 보증공급 : 신규보증, 기한연장, 기보증회수보증(대환보증)을 모두 포함한 실적
** 보 증 잔 액 : 기준일(26.06.30.) 현재 재단을 이용중인 건수 및 금액
*** 대 위 변 제 : 고객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재단이 채권은행에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것
(대위변제 순증 = 대위변제 발생 – 대위변제 회수)

○ **`25년 신규보증지원 효과**

구분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취업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신규보증 1억원 당	1.9억원	0.9억원	1.7명	0.7명

○ **`25년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대비 보증대출의 금리 절감효과**

구분	제1금융권 대비	제2금융권 대비
총 금융비용 절감효과	77.7억원	856.5억원

* 출처 : 「2025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효과 분석 보고서」,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 '27년 보증운용 방향 [정책자금 규모 유지 위한 운용배수 적용]

❍ (운용배수) 시·군 소상공인 정책자금 공급 유지 위해 **'27년 출연요청액 충족시 운용배수 15배 적용(미달시 12배 적용)**

[운용배수 차등 적용 시스템]

구 분	'27년 출연요청액 미달시	'27년 출연요청액 충족시
운용배수	출연액의 12배 적용	출연액의 15배 적용

- **단, 인구감소(관심)지역은 '26년 旣출연금 이상 충족시 운용배수 15배 적용**

* **(인구감소) 밀양,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인구관심) 사천, 통영**

❍ (한도배분) 수익자부담 원칙 적용 지역별 **출연액 비례하여 보증한도 배분**

- 도자금 및 특례보증 한도배분시 출연규모 등을 감안 지역별 배분

❍ (인센티브) 시·군별 재단 출연 인센티브 강화

- 출연 우수 시·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보증금액 한도 우대(금융인센티브) 및 재단 컨설팅 10% 적극 지원(비금융인센티브)
- 道 정책자금 보증한도 배정시 시·군별 출연 비중 점진적 확대

* ('25년) 업체수 80% + 출연비중 20%(시행중) → ('26년) 출연비중 25% → **('27년) 출연비중 30%**

❑ 거창군 출연요청액 : 최소 6억원

❍ (출연배분) 배분항목을 6개로 세분화하여 **공정성 및 형평성 제고**

구 분	총보증공급	보증잔액	대위변제	재정자립도	GRDP	사업체수
비 율	25%	30%	30%	5%	5%	5%

❍ 거창군 최근 5개년 출연 및 대위변제 현황

구 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상반기	합계
출연금액	3억원	4억원	4.5억원	4.5억원	4.5억원	20.5억원
대위변제액	4억원	16억원	25억원	16억원	9억원	70억원

❍ **출연금 증액요청 배경**(정부「**지속가능한 보증지원체계 구축방안(26.6.19) 시행**」)

- 재보증제도 개편 등 신용보증 공급환경 변화로 지역신보 재정기반 위축 예상
 - ▪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하향에 따른 **출연금 감소**(0.07%→0.05%)
 - ▪ 재보증비율 **축소**(50%→30%), 재보증 **미가입**(금융회사 출연부 보증)에 따른 재단 **손실부담 증가**

[재보증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재보증기관)가 재보증함으로써 대위변제 후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대해 재보증비율만큼 보전받는 제도

➲ 소상공인 정책자금 안정적 공급 위한 출연요청액 상향 {4.5억원(26년도) → 6억원(27년도)}

참고 1. '27년 거창군 출연 요청액. 끝.

참고 '27년 거창군 출연 요청액

{기준일자 : '26.6.30. 단위 : 억원, %, 개소, 사업체수: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2023)}

구분	총보증공급(25%)		보증잔액(30%)		대위변제(30%)		재정자립도(5%)		GRDP(5%)		사업체수(5%)		비율 합계	'27출연배분			'26년출연금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자립도	비율	금액	비율	업체수	비율		1차	기준*	요청	출연	요청
거창군	4,165	0.54	590	0.65	9	0.51	9.63	0.23	18,675	0.07	9,949	0.10	2.10	5.9	6.0	6.0	4.5	4.5
합계	194,600	25.00	27,225	30.00	530	30.00	257.3	5.00	1,269,172	5.00	490,268	5.00	100.00	280.0	280	280	161.5	212

* 기준금액 산정 : 0.25 또는 0.75 기준으로 0.5단위 반올림 ex) 2.44 → 2.5 / 19.74 → 19.5 로 반영

** 최종 요청금액 산정 : **Max['27년 기준금액, '26년 실제출연금]**으로 산정. 단, '26년 실제출연금이 당시 출연요청액보다 클 경우에는 **Max['27년 기준금액, '26년 출연요청액]**으로 산정.

*** '27년 출연 요청금액을 초과하여 출연 가능. **'27년 출연요청액 충족시 운용배수 15배 적용, 미달시 12배수 적용. 단, 인구감소(관심)지역은 `26년 旣출연금 이상 충족시 운용배수 15배 적용**

(인구감소) 밀양, 의령, 함안, 창녕,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인구관심) 사천, 통영

※ 재정자립도 비율 산정내역('26년 기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시·군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진주시	함안군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밀양시	창녕군	함양군	고성군	거창군	하동군	남해군	의령군	합천군	산청군
자립도	31.19	25.16	24.06	18.24	17.34	16.74	16.6	13.6	12.87	12.51	10.26	10.17	9.63	8.8	8.61	8.3	6.82	6.4
점 수	1.4/18	1.35/18	1.3/18	1.25/18	1.2/18	1.15/18	1.1/18	1.05/18	1.0/18	1.0/18	0.95/18	0.9/18	0.85/18	0.8/18	0.75/18	0.7/18	0.65/18	0.6/18

2026년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공모 보고

의안 번호	2026 - 134

제출자	거창군수

1. 공모이유

시설 노후화 및 열악한 근로환경 등으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산업단지의 입주환경을 개선하여 창업기업 및 중소기업의 유입을 촉진하고 산업단지 내 기업활동을 활성화 함

2. 공모개요

가. 공 모 명 : 2026년도 산단환경조성사업

나. 대상산단 : 착공일 기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산단

다. 공모사업 : 휴·폐업리모델링(2개소), 청년문화센터(3개소), 노후공장 리뉴얼(3개소)

라. 신청자격 : 지방정부(출자, 출연기관 포함), 산단 관리기관

마. 공모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3. 우리군 신청사업

가. 사 업 명 : 휴·폐업공장 리모델링사업

나. 사업기간 : 2026 ~ 2029년 / 4년간

다. 사업내용

1) 사 업 비 : 127.5억원 / 국 70억, 도 9억, 군 48.5억(사업비 21억, 토지매입비 27.5억)

2) 사업위치 : 거창읍 정장농공단지 / 2필지 12,169㎡ (정장리 100-4, 100-5)

* 거창군 노후산단 ; 4개소 / 정장농공단지(38년), 당산농공단지(34년), 남산농공단지(31년), 석강농공단지(29년)

3) 지원내용 : 휴·폐업공장 건축물 및 유휴부지 등의 기능 향상 및 내·외관 개선 후 창업·중소기업에게 시세의 70% 이하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공급

4.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가. 2026. 7. 24. : (경남도) 2026년 산단환경조성사업 추가 공모 공문 시달

나. 2026. 8. 14. : 사업계획수립 용역 계약 체결

다. 2026. 8. 26. :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공모 사업 추진계획 보고

라. 2026. 8. 27. : 경남도 공모 신청서 제출

마. 2026. 9. 4. : 현장실사

바. 2026. 9. 17. : 발표평가

사. 2026. 9. 30. : 공모사업 선정

아. 2026. 10월 : 협약 체결 및 사업추진

5. 기대효과

가.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시설 개선을 통한 경쟁력 있는 입주환경을 조성하여 신규기업 및 창업·중소기업의 입주를 촉진하고 산업단지 내 기업 활동 활성화 제고

나. 지역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입주공간을 조성하여 창업기업 및 신성장산업 분야 기업의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

붙 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거창읍 정장리 100-4, 100-5)



현장사진(거창읍 정장리 100-4, 100-5)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출연안

의안 번호	2026 - 135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가.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따라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출연금을 지원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1)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9조

2) 대　　상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사장 이홍기)

3) 사 업 비 : 380백만원(출연 예정금액)

• 2027 예산편성 요구사항 (단위 : 백만원)

사업기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출연금	240	240	220	272.5	380

※ 2027년 출연금 380백만원(2026년 대비 107.5백만원 증액)

4) 사업내용

•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인건비) : 320백만원

• 사면안정성 프로그램 구입 : 60백만원

나. 예산지원 사유

1) 거창화강석연구센터는 기업애로해소, 공인시험서비스 제공, 대내외 네트워크 활동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며 거창 석재산업의 기술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2)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건비를 증액하여 전액 지원하고, 채석장 사면의 붕괴·낙석 등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면안정성 분석 기반을 구축하여 원석의 안정적인 생산과 석재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다. 2027년 화강석 연구센터 주요사업

1) 거창화강석 홍보 및 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

- 유튜브 채널 운영, 입체 가이드북 제작, 평생학습축제 석재 체험장 운영 등을 통한 거창화강석의 우수성 및 산업 경쟁력 홍보

2) 국제공인시험기관 및 조달물자 전문검사기관 운영

- 국제규격 품질경영시스템 및 공인시험기관 운영과 조달물자 전문검사를 통한 거창화강석의 품질관리 및 대외 신뢰도 제고

3) 기업지원 및 연구개발을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 시험·분석 및 연구용역 등 자체 수익을 활용한 석재기업 기술개발·장비개선·신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고, 산업 현장 수요를 반영한 연구개발 및 연구용역 수행

3. 관련법규 및 조례

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20조

나.「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제7조 및 제9조

4. 참고사항

가. 출연기관 운영현황 : 붙임 1

나. 관계법령 : 붙임 2

붙임1 거창화강석연구센터 운영현황

Ⅰ 연구센터 일반현황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 연구센터 현황

❍ 법 인 명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이사장 : 거창군수)

❍ 법인허가(설립등기) : ‘07. 1. 31.(자본금 : 10백만원(거창군 출연))

❍ 임원현황 : 이사장 외 11명 (이사 10, 감사 2)

❍ 직원현황 : 총 6명(센터장 1, 연구직 3, 기술직 2)

성 명	직 책	담 당 업 무
최태환	연구센터장	■ 근무기간 : 2021년 8월 23일 ~ 현재 ■ 담당업무 : 업무 총괄 / 기업지원 / 협력네트워크
정영일	책임연구원	■ 근무기간 : 2008년 3월 10일 ~ 현재 ■ 담당업무 : 시험기관 총괄 / 법인 운영 / 사업 관리 / 기술개발
이승안	선임연구원	■ 근무기간 : 2021년 8월 23일 ~ 현재 ■ 담당업무 : 시험기관 품질 및 기술업무 지원 / 채석기술 지원
류종법	연 구 원	■ 근무기간 : 2026년 1월 19일 ~ 현재 ■ 담당업무 : 석재산업홍보, 용역사업지원, 시험분석, 품질관리 지원
변태식	사원	■ 근무기간 : 2024년 3월 28일 ~ 현재 ■ 담당업무 : 시료제작, 품질시험실무, 자원조사, 장비운영 등
박지훈	사원	■ 근무기간 : 2024년 3월 28일 ~ 현재 ■ 담당업무 : 시료제작, 품질시험실무, 자원조사, 장비운영 등

Ⅱ 연구센터 주요업무

□ 2026년도 성과목표 및 실적

구 분	사 업 명	'26년도 목표	실적 (2026.9.기준)
실태조사	채석업 실태조사, 가공업 실태조사	2건	2건
홍보사업	입체가이드 북 제작	1건	진행중
	석재전시장 제작	1건	1건
교육·관광 활성화 사업	한마당대축제 석재 체험장 운영	1건	진행 중
	교육용 석재 표본 제작	1건	1건
석산지원사업	토석채취허가지 구역선 분석	1건	진행중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면 모니터링	1건	진행중
학술연구용역	석재자원조사 등 용역사업 수주	3건	3건
연구개발	학술연구, 기술개발 등	2건	진행중
기타	대군민 안전한 보도환경을 위한 미끄럼 안정성 분석	1건	진행중
경영수익	공인시험기관 운영	155,000천원	85,161천원
	사면분석 등 석산지원	25,000천원	진행중
	용역사업/기타수익금	90,000천원	108,137천원
	합 계	270,000천원	193,298천원

Ⅲ 2026년 주요 사업성과

(1) 석재산업 실태조사

가. 사업내용

❍ 거창석재산업 현황조사를 통해 석재산업 육성지원 정책 수립에 대한 객관적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고, 거창석재산업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 대 상 : 거창군 석재 채석기업 및 가공기업

❍ 추진 경과

- 가공업체 : 17개 업체 조사 완료
- 채석업체 : 7개 업체 조사 완료

❍ 향후계획

- 석재산업 육성지원 정책 자료 수집을 위한 통계 처리
- 거창석재산업 지원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2) 거창화강석 입체 가이드 북 제작 및 배포 사업

가. 사업내용

❍ 기존 평면형 카탈로그나 팸플릿과 달리, 거창화강석의 특성과 아름다움을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입체형 가이드북 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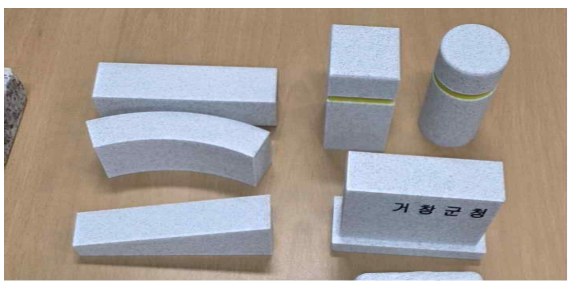
❍ 전시회, 박람회, 교육기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배포하여 브랜드 홍보와 산업 가치 전달에 활용

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 경계석(4종) 및 볼라드, 조경석 등 15종 이상 제작 완료

❍ 향후계획

- 가이드북 샘플상자 제작 후 경상남도 내 시·군 관련 부서 배포 예정





3D 프린터를 이용한 석제품 제작

(3) 석재전시장 제작

가. 사업내용

❍ 거창 석재산업을 홍보하고 석재의 산업적·문화적 가치를 알리기 위한 전시장 조성

❍ 거창화강석을 비롯한 국내외 우수 석재를 전시하여 방문객이 다양한 석재의 품질과 특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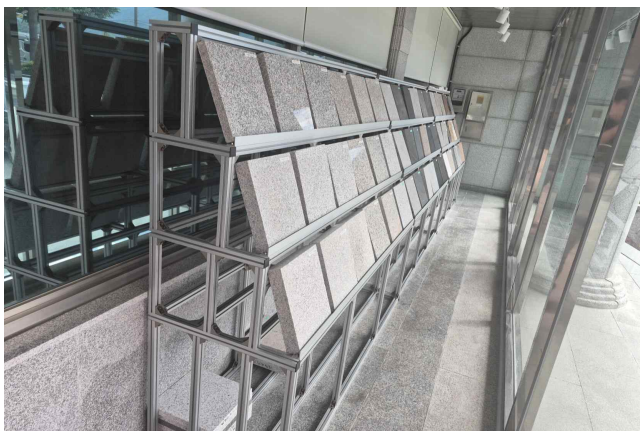
나. 추진 경과

❍ 전시장 제작 완료

❍ 40여종 국내·외 석재 전시

❍ 거창화강석 홍보관과 연계 운영하여 방문객을 대상으로 거창석재산업 및 거창화강석 홍보





(4) 2026 거창한마당 대축제 『석재 체험장』 부스 운영

가. 사업내용

❍ 2026년 거창한마당 대축제 평생학습축제에 참가하여 석재·지질 분야 체험형 부스 운영

❍ 거창석재산업의 역사와 지역적 특성, 우수성을 전시·체험 콘텐츠를 통해 홍보하고 관련 제품 전시

❍ 화강암 형성과정 및 지질구조 등 석재·지질 분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나. 추진 경과

❍ 대구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와 체험 콘텐츠 및 운영방안 협의 중

❍ 체험 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방법 등 세부 운영계획 협의 중

(5) 교육용 석재(암석) 표본 제작을 통한 석재산업 교육연계 강화

가. 사업내용

❍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과 과정에서 다루는 9종의 화성암 표본 제작

❍ 학생들이 직접 보고 만질 수 있는 체험형 학습 자료로 제공하여 지질학적 이해와 학습 흥미 증진

❍ 표본 제작과 함께 화강석의 특성, 거창석재산업의 역사 및 지역적 가치에 대한 안내 자료를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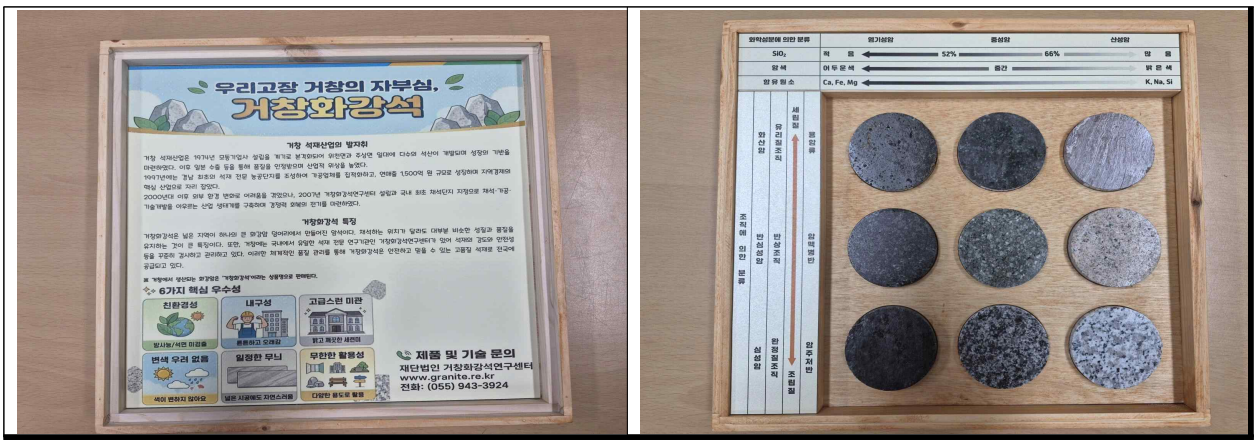
나.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

❍ 화성암 구성 암석 9종 샘플 채취 및 시료 제작 완료

❍ 샘플상자 제작 및 표본 제작 완료

❍ 향후계획

- 교육자료 활용을 위한 거창군 관내 초등·중학교 배포 예정(10월 예정)



(6) 거창군 토석채취허가지 항공촬영 및 구역선 분석

가. 사업내용

❍ 토석채취허가지 항공촬영을 통해 허가구역 및 지적경계선을 정밀 분석하여 정확한 공간정보 확보

❍ 토석채취허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현장 점검을 위한 공간정보 관리 기반 마련

❍ 허가구역 관리의 투명성 및 정확성을 높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채석환경 조성

나. 추진 경과

❍ 토석채취장 항공촬영 완료 : 10개소 완료

❍ 구역선 분석 중(9월 중 완료 예정)

(7)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면 모니터링 사업

가. 사업내용

❍ 채석장 사면 및 복구 대상 구간을 드론으로 고해상도 촬영하여 3D 모델과 정밀 지형 데이터를 생성하고 구조를 시각화함

❍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해 사면 경사도, 소단 폭·길이, 전체 형상을 정밀 모니터링하며, 법적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함

❍ 경사도가 급하거나 소단 구조가 불안정한 구간을 식별하여 안전한 복구 설계와 시공 근거 자료로 제공함

나. 추진 경과

❍ 대상 5개소 항공촬영 완료

❍ 촬영자료 기반 허가구역 및 지적경계선 모니터링·분석 중(9월 중 완료 예정)

(8) 대군민 안전한 보도환경 조성을 위한 미끄럼 안정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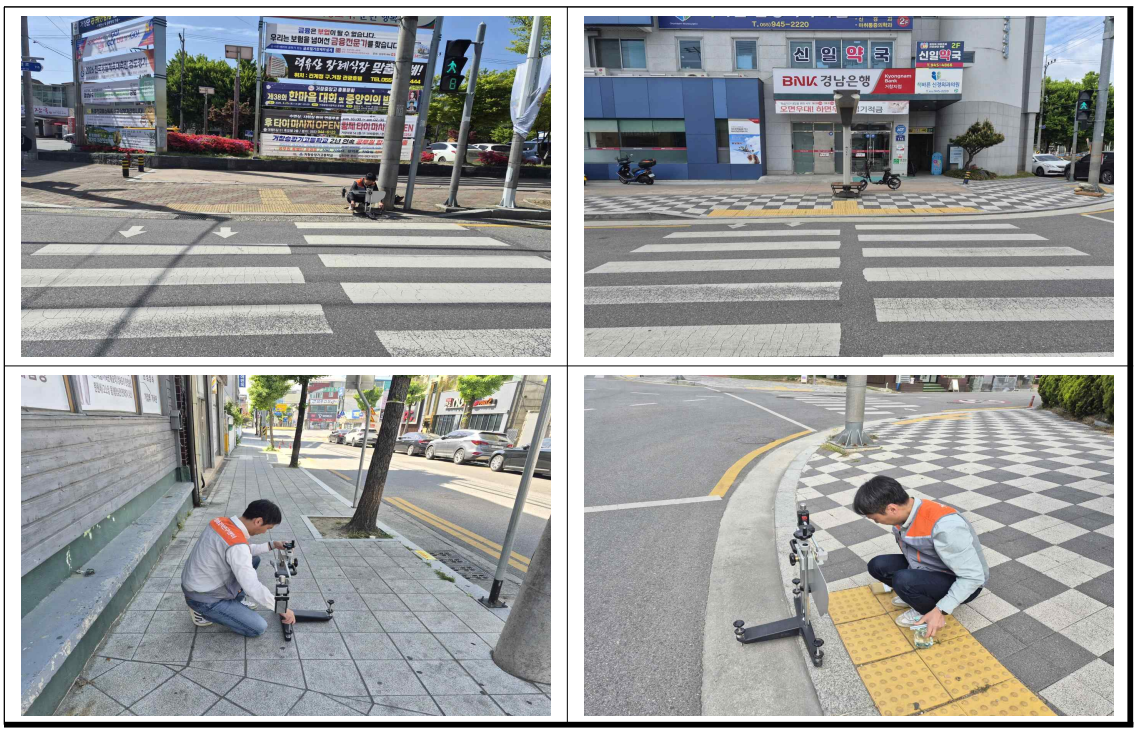
가. 사업내용

❍ 관내 화강석으로 시공된 보도용 판석 및 경계석을 대상으로 미끄럼 저항성 검사 실시

나. 추진 경과

❍ 관내 7개 지역, 38개 지점 미끄럼 저항성 검사 완료

❍ 2개 지역 보완검사 실시 예정(10월 중 완료)



(9) 연구용역 수주

❍ 연구센터는 보유 기술과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외부 연구용역을 수주함으로써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자체 수익 창출을 통한 재정 건전성을 확보에 노력하고 있음

❍ 2026년 수주 사업

- 2026 골재자원조사 사업
- 2026 석재자원조사 사업
- 2026 해외수입석 품질분석 사업

(10) 공인시험기관 및 조달전문검사기관 운영(계속 사업)

❍ 국제규격의 품질경영시스템 운영과 공인시험성적서 발급을 통해 거창 화강석의 품질과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연구센터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자립화에 기여

(11) 기업애로사항 지원 및 협력 네트워크 활동

❍ 지역 석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술, 품질, 경영 등 전반적인 기업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해결 방안을 제공함

❍ 지역 석재산업의 대외 인지도 제고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관련 기관, 기업, 학계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석재 관련 대외 업무를 지원함

Ⅳ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성과

☐ 조경석 단체표준 규격 제정을 통한 거창기업 매출액 증대

- ❍ 2012년 조경석 단체표준 제정을 위한 용역 수주 및 단체표준 제정
- ❍ 2013년 조경석 조달다수공급자(MAS) 물품 등록
- ❍ 연구센터에서 조경석 생산 권장 및 조달청 등록 제안을 통하여 당시 거창 관내 조경석을 생산하는 3개 기업의 매출액은 37억이었으며, 현재 10개 기업이 조경석을 생산하며 매출액은 200억에 달함
- ❍ (정책적 유도) 관내 기업에 지속적인 조경석 생산 및 조달 등록 독려
- ❍ (품질경쟁력 강화) 조달전문검사기관 및 공인시험기관 운영을 통하여 관내 업체에 고품질의 조경석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

※ 거창 조경석 산업은 **전국 조경석 조달시장 점유율 약 12%를 기록하며, 조달시장 내 전국 1위 매출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거창 관내 기업 조경석 매출액>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거창 업체수	5	7	8	9	11	10	9	11	11	9	13	10
매출액 (억)	**25**	**92**	**86**	**87**	**94**	**88**	**109**	**139**	**101**	**135**	**219**	**212**

☐ 석재 원산지 검증지원 효과

- ❍ 국내 유일의 석재 원산지 검증기관 → 거창화강석 사용 유도
- ❍ 거창화강석연구센터는 석재 원산지 판별에 대한 과학적 검증 연구를 통해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조달청 및 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 원산지 단속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중국산 저가 석재가 국내석으로 둔갑하여 공급되는 부작용을 막아 국내 석재산업 보호에 이바지하고 있음
- ❍ 2013년 울산 "ㄷ"업체의 부당납품 사례를 적발함으로써, 울산지역 관급물량에 대한 거창 관내 업체의 매출이 평균 10억 이상 증가하였음
- ❍ 파악되지 않는 타 지역까지의 효과를 예상한다면 상당한 매출액의 증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	2021	2022	2023	2024	2025
울산관급물량	1,819	1,854	2,000	1,497	2,355	2,602
울산 "ㄷ"석재	1,114	-	-	-	-	-
거창 관내업체	520	1,371	1,402	1,291	1,668	1,979
타 지역 업체	202	483	598	206	687	623

Ⅴ 2027년 주요사업 추진내용

(1) 핵심사업

가. 거창석재산업 홍보사업

❍ 사업목적 : 거창 석재산업의 우수성과 경쟁력을 대내외에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거창화강석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석재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사업내용

■. 거창석재산업 홍보를 위한 유튜브 채널 운영

■. 거창화강석 입체 가이드북 제작을 통한 석재산업 홍보

■. 2027 거창평생학습축제『석재 체험장』부스 운영(안)

❍ 사업효과

■. 홍보 및 브랜드 가치 제고 : 유튜브 채널 운영과 입체 가이드북 제작을 통해 거창 화강석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거창 석재 브랜드의 인지도 및 이미지 상승

■. 석재산업 활성화 및 수요 창출 : 다각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 신규 판로를 개척하고, 국내외 소비자와 관련 산업계의 관심 유도로 지역 석재산업 전반의 매출 증대 도모

■. 지역 축제 연계 및 주민 친밀도 제고 : 거창한마당대축제 평생학습축제 체험장 부스 운영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석재산업에 대한 친숙하고 긍정적인 인식 제고

나. 사면 안전성 모니터링 사업

❍ 사업목적 : 드론 및 정밀 분석 기술을 활용한 채석장 사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낙석·붕괴 등 재해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안정적인 원석 생산 환경 조성

❍ 사업내용

■. 드론 기반 채석장 사면 정밀 촬영 및 분석

■. 낙석·붕괴 우려구간 설정 및 집중 모니터링

■. 정기 안전성 평가 및 위험요인 개선방안 제시

❍ 사업효과

■. 사고 예방 및 안전성 확보

- 사면 붕괴 및 낙석 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대응을 통해 채석장 내 인명 사고와 중대재해 선제적 예방

■. 안정적인 원석 공급 체계 유지

- 재해로 인한 생산 중단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관내 석재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 및 원가 경쟁력 지원

■.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관리

- 정밀 촬영 데이터 축적을 통한 채석장 안전 관리의 객관성·신뢰성 확보 및 효율적 모니터링 체계 구축

다. 거창석재산업 상생지원사업(안)

❍ 사업목적

■. 거창석재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기술 혁신 및 생산성 향상 지원

■. 기업의 자체 추진이 어려운 기술개발 및 시설·장비 개선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경쟁력 강화 기반 마련

■. 연구센터의 자체 수익을 지역 석재산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기업과 연구센터가 함께 성장하는 상생 기반 마련

❍ 사업내용

■. (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의 시험·분석 및 연구용역 등을 통해 창출된 자체 수익금을 활용하여 거창군 소재 석재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생산활동 지원

❍ 주요 지원분야

■. 기술개발 지원

■. 장비개선 및 현대화

■. 신제품 개발 지원

■. 지식재산권 확보 지원

❍ 지원방법

■. 기업의 사업계획을 공모하여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 선정

■. 사업의 필요성, 기술성, 사업성 및 산업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 기업의 자부담을 포함한 공동투자 방식의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 지원조건은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결정

(2) 기타 주요사업

❍ 기업애로사항 지원

■ 지역 석재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술, 품질, 경영 등 전반적인 기업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해결 방안을 제공함

❍ 공인시험기관 및 조달전문검사 운영

■ 국제규격의 품질경영시스템 운영과 공인시험성적서 발급을 통해 거창화강석의 품질과 대외 신뢰도를 높이고, 연구센터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자립화에 기여

❍ 석재관련 대외업무 지원 및 협력 네트워크 활동

■ 지역 석재산업의 대외 인지도 제고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관련 기관, 기업, 학계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석재 관련 대외 업무를 지원함.

❍ 연구개발 및 연구용역 수주

■ 지역 석재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실용적 기술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과 외부 용역 수주를 연계하여 수행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기술 개발과 연구센터의 수익 창출을 동시에 달성함

□ 기대효과

❍ 지역에서 차지하는 거창화강석 산업의 중요성 인식 제고

❍ 석재산업을 선도하는 거창군 위상 및 거창화강석 산업 중흥 기대

【 출연기관 현황 】

재단법인 거창화강석연구센터

<table>
<tr><td rowspan="2">설립근거</td><td colspan="3">법률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민법 제32조
규칙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td><td>전화번호 : 055-943-3924</td></tr>
<tr><td colspan="3"></td><td>홈페이지 : granite.re.kr</td></tr>
<tr><td>주요연혁</td><td colspan="2">법인설립허가 : ‘07. 1. 31</td><td>기관형태
(출자, 출연)</td><td>출연기관</td></tr>
<tr><td rowspan="2">인원현황
(‘26. 9.
현원기준)</td><td>계</td><td colspan="2">정규직</td><td>비정규직</td></tr>
<tr><td>5명</td><td colspan="2">5명</td><td>0명</td></tr>
<tr><td rowspan="14">임 원
(‘26. 9.기준)</td><td>직 책
(직책명)</td><td>성 명
(익명처리)</td><td colspan="2">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td><td>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td></tr>
<tr><td>이사장</td><td>이홍기</td><td colspan="2">거창군청(거창군수)</td><td>당연직</td></tr>
<tr><td>상임이사</td><td>최태환</td><td colspan="2">(재)거창화강석연구센터장</td><td>〃</td></tr>
<tr><td rowspan="8">비상임이사</td><td>장성수</td><td colspan="2">국립창원대학교 거창캠퍼스
산학협력단 거창캠퍼스 본부장</td><td>〃</td></tr>
<tr><td>이희열</td><td colspan="2">NH농협은행 거창군지부장</td><td>〃</td></tr>
<tr><td>한경원</td><td colspan="2">거창석재조합(주) 대표</td><td>〃</td></tr>
<tr><td>이소우</td><td colspan="2">거창석산협회장</td><td>〃</td></tr>
<tr><td>김인수</td><td colspan="2">거창군청(경제기업과장)</td><td>〃</td></tr>
<tr><td>주우일</td><td colspan="2">경남도립거창대학 교수</td><td>‘25. 3. 21. ~ ‘28. 3. 20.</td></tr>
<tr><td>김성호</td><td colspan="2">한국승강기대학 교수</td><td>‘25. 3. 21. ~ ‘28. 3. 20.</td></tr>
<tr><td>임권택</td><td colspan="2">한국석재공업협동조합</td><td>‘25. 3. 21. ~ ‘28. 3. 20.</td></tr>
<tr><td rowspan="2">감 사</td><td>최채환</td><td colspan="2">거창군청(산림과장)</td><td>당연직</td></tr>
<tr><td>변범식</td><td colspan="2">변범식변호사사무소 대표</td><td>‘25. 3. 21. ~ ‘28. 3. 20.</td></tr>
<tr><td>주요기능</td><td colspan="4">거창화강석 1, 2차산업 관련 기업지원, 연구 및 개발, 품질유지 및 관리, 공인시험 서비스 등 석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td></tr>
<tr><td colspan="2">자본금[1]
(단위:백만원)</td><td colspan="2">10
(직전연도말 기준)</td><td>출자·출연액(2026)
(단위:백만원)</td><td>272.5</td></tr>
<tr><td rowspan="3">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td><td>연도</td><td>2023</td><td>2024</td><td>2025</td><td rowspan="3">재무현황
(백만원)
‘25.12.31기준</td><td>자산</td><td>694
(자산 총액)</td></tr>
<tr><td>예산액[2]</td><td>972</td><td>1,066</td><td>1,071</td><td>부채</td><td>6
(부채 총액)</td></tr>
<tr><td>지자체
지원액[3]</td><td>240</td><td>240</td><td>220</td><td>자본[1]</td><td>688
(자본금 총액)</td></tr>
<tr><td rowspan="2">경영성과
(단위:백만원)
‘25.12.31.기준</td><td colspan="3">총수익</td><td>총비용</td><td>당기순이익</td></tr>
<tr><td colspan="3">241</td><td>166</td><td>72</td></tr>
</table>

붙임2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시행 2025. 4. 1.] [법률 제20869호, 2025. 4. 1., 일부개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奬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거창화강석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경제복지국 산림과) [시행 2022. 8. 10.]

제9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연구센터의 사업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운영경비와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센터가 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거창 임업대학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6-136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가. 거창 미래임업을 선도할 전문인력과 임업리더를 양성하고 선진 임업경영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교육 역량을 갖춘 기관에 임업대학 교육과정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 탁 명 : 거창 임업대학 위탁 운영

나. 위 탁 비 : 60,000천원(군비)

다. 위탁사무

1) 교육생 모집 및 선발

2) 거창군 임업대학 교과목 설계 및 세부일정 수립

3) 교육교재 제작 배부 및 강사 섭외·관리

4) 교육 전반에 관한 운영관리

5) 교육 후 교육완료 보고서 제출

6) 현장실습 및 평가 진행 등

라. 위탁기간 : 2027. 5. ~ 12.(예산범위내)

마. 향후계획

1) 2026. 10월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2) 2027. 1월 ~ 2월: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

3) 2027. 3월 ~ 4월 : 위수탁 협약체결 및 교육생 모집

4) 2027. 5월 ~ 12월 : 임업대학 운영 및 성과평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산림경영 교육·훈련등 지원)

2)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지원 조례」제6조(교육훈련)

3)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군의회 동의)

나. 위탁운영계획 : 따로붙임

붙임1 거창 임업대학 위탁 운영계획

1 근거법령

○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교육훈련)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군의회 동의) 등

2 위탁개요

○ 위 탁 명 : 거창 임업대학 위탁 운영
○ 위탁기간 : 2027. 5. ~ 12.
○ 운영방법 : 산림청 지정 전문교육기관에 민간위탁 운영
○ 수탁자 자격 : 산림청에서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 사 업 비 : 60백만원(군비)
○ 위탁내용
- 교육생 모집 및 선발
- 거창군 임업대학 교과목 설계 및 세부일정 수립
- 교육교재 제작 배부 및 강사 섭외·관리
- 교육 전반에 관한 운영관리
- 교육 후 교육완료 보고서 제출
- 현장실습 및 평가 진행 등

3 추진계획

○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 2026. 10월 임시회
○ 수탁기관 모집 공고 : 2027. 1월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구성 및 개최 : 2027. 2월
○ 위·수탁 협약체결 및 교육생 모집 : 2027. 3월 ~ 4월
○ 임업대학 운영 및 성과평가 : 2027. 5월 ~ 12월

붙임2 관계 법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산림경영 교육·훈련등 지원)

② 산림청장은 교육·훈련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절차에 따라 교육·훈련등을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거창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

제6조(교육훈련)

① 군수는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임업인 또는 산림경영을 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훈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육·훈련 업무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거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붙임3 **제안서 평가표**

2027년 거창임업대학 위탁운영 제안서 평가표

사업자명		평 가 일	
주 관 적 평가점수		평가위원 (소속/성명)	/ (서명)

평가항목			등 급				등급심사기준	비고
대분류		중분류	A	B	C	D		
기술능력평가 (80점)	정량적 평가 (20점)	기관연혁	3	2.5	2	1.5	❍ 기관연혁 A 7년이상 / B 6~5년 / C 4~3년 / D 2년이하	
		경영상태	3	2.5	2	1.5	❍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최근2년평균) A 100% 이상/ B 100%미만~75%/ C 75%미만~50%/ D 50%미만	
			3	2.5	2	1.5	❍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최근2년평균) A 100% 이상/ B 100%미만~75%/ C 75%미만~50%/ D 50%미만	
		교육수행실적 (건수)	5	4	3	2	❍ 최근 3년간 일반시민 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수행 실적(건수, 기준금액 : 4천만원 이상) A 15건이상 / B 14~10건/ C 9~5건 / D 4건 이하	
		교육전문인력 보유현황	6	5	4	3	❍ 사업수행을 위한 교육전문인력 보유현황 A 8명이상 / B 7~5명 / C 4~2명 / D 2명미만	
	정성적 평가 (60점)	강사진구성 우수성	15	13	11	9	❍ 트랜드 반영 우수 강사진 반영도 ❍ 전공과정 교육내용에 부합하는 우수 강사진 반영도 A 탁월 / B 우수 / C 보통 / D 미흡	
		교육프로그램 적절성	15	13	11	9	❍ 지역특성 이해도 ❍ 전공과정 선정의 적절성 ❍ 프로그램 운영 회차별 테마 선정의 적절성 ❍ 프로그램(교육내용)구성의 충실성 A 탁월 / B 우수 / C 보통 / D 미흡	
		교육운영능력 (전문성)	15	13	11	9	❍ 교육 운영의 현실성 ❍ 교육기관의 적극성 및 신뢰도 ❍ 운영전략, 운영경험, 전문성 등 A 탁월 / B 우수 / C 보통 / D 미흡	
		교육지원 및 사후관리	15	13	11	9	❍ 타 업체와의 차별화된 지원 방안 ❍ 활성화 방안 제시 A 탁월 / B 우수 / C 보통 / D 미흡	
입찰가격 평가(20점)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합 계			100점 만점					

산림치유, 숲해설 및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026 - 137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가.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방문객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산림복지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산림복지 전문인력과 운영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나. 이에「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거창군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2027년 산림치유, 숲해설 및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 위탁 운영

나. 위　　치 : 항노화 힐링랜드 일원(거창군 가조면 의상봉길 834)

다. 사 업 비 : 120,000천원(균 60,000 도 42,000 군 18,000)

1) 산림치유 : 60,000천원(균 30,000 도 21,000 군 9,000)

2) 숲 해 설 : 30,000천원(균 15,000 도 10,500 군 4,500)

3) 유 아 숲 : 30,000천원(균 15,000 도 10,500 군 4,500)

라. 운영인력 : 4명(산림치유지도사 2명, 숲해설사 1명, 유아숲지도사 1명)

마. 시설현황

1) 자연휴양림 : Y자형 출렁다리, 하늘구비길, 산림휴양관, 숲속의 집

2) 치유의 숲 : 산림치유센터, 무장애데크로드, 숲체험장, 명상숲길 등

3) 유아숲체험원

바. 위탁대상 사무 : 산림복지서비스(산림치유·숲해설·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 기획·운영

1) 산림복지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2) 전 연령층 대상 맞춤형 산림복지 프로그램 운영

3)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 및 운영성과 분석 등

사. 위탁기간 : 2027. 3. ~ 11.(예산범위내)　※ 국·도비 예산확보 사업

아. 향후계획

1) 2027. 1월 : 사업계획 수립(사업규모 및 과업목표 설정)

2) 2027. 2월 :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

3) 2027. 2월 : 위·수탁 협약체결

3. 참고사항

가. 2026년 산림치유 및 숲해설 민간위탁 운영실적

1) 운영기간 : 2026. 3. 16. ~ 11. 15.

2) 장　　소 : 항노화힐링랜드 일원

- 산림치유센터, 자생식물원, 숲속놀이터, 무장애데크로드, 명상장 등

3) 대　　상 : 유아에서 노인까지 전 연령층

4) 인　　원 : 1회 20명이내

5) 위탁기관 : 좋은숲연구소(대표 신승호)

6) 운영방법 : 분야별 전문인력(산림치유지도사 2명, 숲해설사 1명)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 2027년부터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을 추가하여 산림복지서비스 영역 확대

7) 참여인원 : 총 3,003명(산림치유 1,649명, 숲해설 1,354명) ※ 8월말 현재

8) 신청방법 : 힐링랜드 홈페이지 및 전화 예약 등

9) 체 험 료 : 산림치유 어른 1만원, 청소년 5천원 / 숲해설 무료

10) 프로그램 : 산림치유 및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 산림치유 : 주 6일, 일 2회(09:30~12:00, 13:30~16:00)

- 숲 해 설 : 주 6일, 일 3회(10:00~11:00, 13:00~14:00, 15:00~16:00)

※ 계절별 힐링랜드 현장에 맞추어 프로그램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운영

11) 세외수입 : 금9,934천원(산림치유프로그램)　※ 8월말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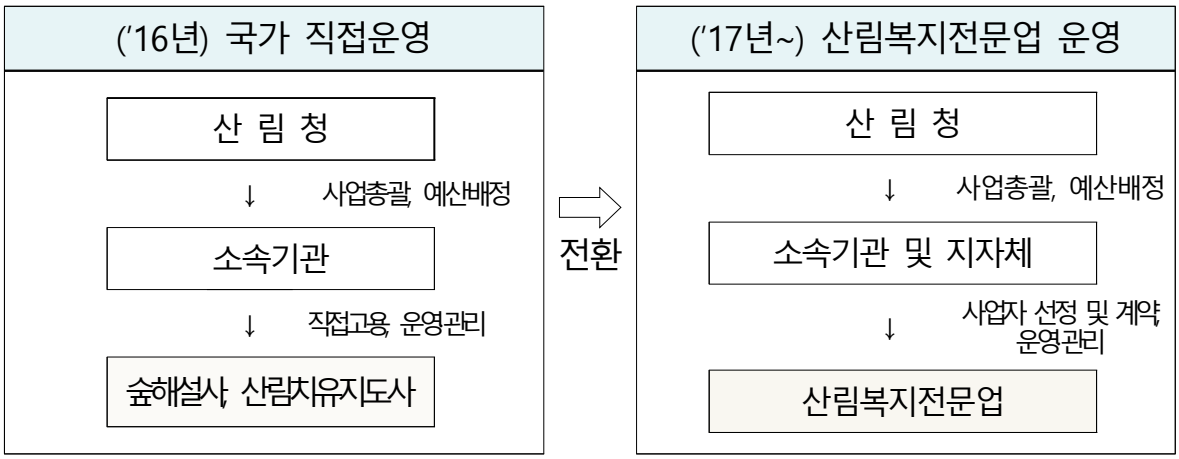
나.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장점

1) 산림치유·숲해설·유아숲체험원 등 분야별 전문인력을 보유한 산림복지 전문업에 위탁함으로써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확보하고, 이용자 수요에 맞는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2) 계절 및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으로 이용자 만족도 및 참여율 제고

3)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산림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으로 전환 >



다. 관계법령 : 붙임

1)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및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2)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및 제20조(지원)

3)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4)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

5) 「치유의 숲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제9조

6)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5조

7)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붙 임 관계법령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① 산림복지시설을 조성·운영하여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복지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① 산림복지전문업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① 산림청장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

③ 산림교육전문가는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산림교육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⑤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으려는 사람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에서 산림교육을 실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
⑦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20조(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1.>
1.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2. 제8조제3항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자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자
4.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5.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지정을 받아 운영하는 자
6.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이 치유의 숲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

법 제11조의3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
1.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치유의 숲: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2. 50만제곱미터 미만의 치유의 숲: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또는 숲길: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운영계획 수립)

치유의 숲시설의 운영·관리자(이하 "운영·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치유의 숲의 일반현황
2. 치유의 숲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3.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계획
4. 산림치유지도사 배치계획

제9조(프로그램 운영)

① 운영·관리자는 국민들이 치유의 숲시설을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여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에 따른다.

③ 운영·관리자는 치유의 숲의 산림치유 환경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산림치유지도사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산림청장이 계획하는 교육훈련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절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의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군의회 동의)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여부에 관하여 거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경우
2. 민간위탁 중인 사무에 대하여 기존의 수탁기관과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하여 계약(이하 “재계약”이라 한다)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군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민간위탁 예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절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회동의) ①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위탁하려는 사무의 처리 소관부서(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을 포함한다. 이하 “소관부서”라 한다)가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2027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

의안 번호	2026 - 139

제출자	거창군수

1. 공모이유

가. 기존 체육시설은 군민 전체 이용 중심으로 **청소년 전용공간이 부족**하고, 다양한 체육활동과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간 확충이 필요

나. 거창체육역사를 전시·교육하고 지역 체육인의 발자취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체육·문화·교육·소통이 결합 된 청소년 거점 공간 조성이 필요**

2. 공모내용

가. 사 업 명 : 다목적 스포츠센터 건립(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경량형체육관”)

나. 사업기간 : 2027. ~ 2030.

다. 사 업 비 : 9,000백만원(국비4,000 군비5,000)

라. 위　　치 : 거창읍 심소정길 39-36 스포츠파크 내

마. 사업내용 : 청소년 체육관 1동 신축(연면적 2,000㎡, 지상 2층)

구분	시설	면적	주요 기능
계		2,000㎡	
1층	문화공간	100㎡	체육역사, 전시, 소통, 교육
	다목적 체육관	785㎡	농구, 배드민턴, 배구, 풋살 등
2층	체력단련장	534㎡	웨이트, 유산소, 기초체력 증진
	GX룸	105㎡	댄스, 필라테스, 스트레칭 등
공용	부대시설	476㎡	로비, 탈의실, 샤워실, 화장실, 사무실, 창고 등

※ 세부 공모내용

- 공 모 명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경량형 체육관)
- 지원내용 : 4,000백만원(4년간)

- 지원조건 : 연면적 2,000㎡ 정도 생활체육관 건립

3. 추진계획

가. 2026. 9. : 공모사업 신청(거창군→경남도)

나. 2026. 10. : 경남도에서 우선순위 부여 후 제출(경남도→문체부)

다. 2026. 11. : 평가 실시(문체부)

라. 2026. 11. 말 : 공모 최종 발표

마. 2027. 1. ~ 12. : 기본·실시설계 및 행정절차(군관리계획 변경 등)

바. 2028. ~ 2030. : 공사 착공 및 준공

4. 기대효과

가. 청소년의 다양한 체육활동과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하여 건강한 성장 도모

나. 거창체육역사의 보존·계승 및 지역 체육문화에 대한 자긍심 제고

다. 체육·문화·교육·소통이 결합된 청소년 거점공간 조성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붙임1 위치 및 조감도

조성 전



조성 후



2027년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 신청 보고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

의안 번호	2026 - 140

제출자	거창군수

1. 제안이유

가. 2011년 준공된 이후 15년이 경과하여 시설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시설의 전반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함.

나. 한해 21만명이 이용하는 거창국민체육센터의 시설안전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국민체육센터의 전반적인 개보수가 필요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일반형")

나. 사업기간 : 2027.

다. 사 업 비 : 3,424백만원(국비 1027.2 군비2,396.8)

라. 위　　치 : 거창읍 심소정길 39-36 거창국민체육센터

구분	시설	면적	주요 시설
계		3,591㎡	
지하1층	기계실		펌프 및 배관시설 운용
1층	수영장	1,490.25㎡	25m 6레인 유아풀 2레인
2층	탁구장	627.7㎡	탁구대 10개 설치
3층	볼링장	476㎡	볼링레인 10개

※ 세부 공모내용

- 공 모 명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일반형)
- 사 업 비 : 3,424백만원(국비 30 군비 70)
- 지원조건

지원률 구분	지원비율(%)
(노후) 준공된 지 10년 경과한 경우	30

3. 추진계획

가. 2026. 10. : 공모사업 신청(거창군→경남도)

나. 2026. 10. : 경남도에서 우선순위 부여 후 제출(경남도→문체부)

다. 2026. 11. : 평가 실시(문체부)

라. 2026. 11. 말 : 공모 최종 발표

마. 2027. 1. ~ 3. : 기본·실시설계 및 행정절차

바. 2027. 3. ~ 9. : 공사 착공 및 준공

4. 기대효과

가.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을 통한 이용객 만족도 향상

나. 전반적인 국민체육센터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 안전 및 위생 향상

붙임1 **사업위치도 등 첨부설명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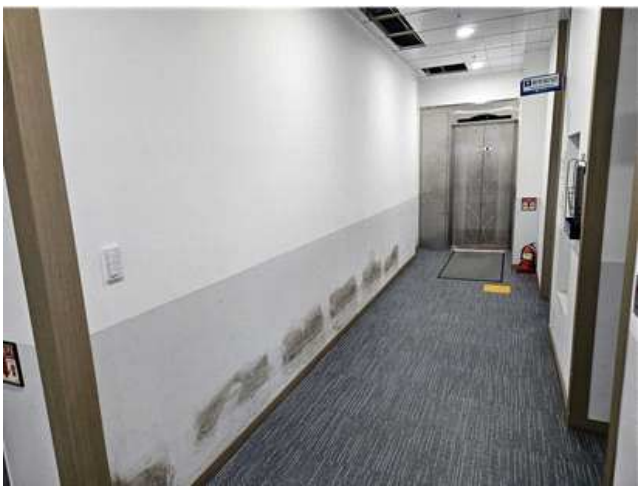
❑ 위 치 도



❑ 현장사진



❑ 현장사진

	
1층 수영장 타일 교체	남녀 샤워장 및 탈의실 노후배관 교체
	
3층 볼링장 벽면 도색	3층 볼링장 리모델링
	
실내 계단 벽면 도색	옥상 방수공사